

4.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공시자료 제출 서식 신설)
-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기술특례상장 주관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위원회의 재심사유 규정 추가·신설)
- 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개정)
- 마.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및 조사정보 유출 금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3/12/26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2023.10.12 제정, 2023.11.1 시행)에서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분기별 재산정결과를 협회에 보고·공시하도록 정함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공시를 위한 제출서식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공시자료 제출 서식(제56조 제3항 제13호 신설)
 -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증권·선물회사 및 증권·선물 외의 기타 금융투자회사는 제출자료 서식 구분
 - (제출기한) 증권·선물회사는 '매분기 말일까지. 다만, 분기중 예탁금이용료율 변경시 시행일 7영업일 전까지'
 - 기타 금융투자회사는 '예탁금이용료율 변경 시 시행일 7영업일 전까지'
 - (공시서식) 별지 제68호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3/12/19 개정 · 2024/1/1 시행)¹⁾

1) 개정 이유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2023.7.27)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인수 업무규정 용어 변경 및 기술특례상장 주관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매청구권 부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기술특례상장 유형 개선]

기존			개정
기술특례 유형 및 평가주체	중점 평가요소		기술특례 유형 및 중점 평가요소
1. 기술성 트랙 (평가주체 : 전문평가기관)	① 기술의 혁신성	⇒	1. 혁신기술 트랙 (전문평가기관이 기술력 평가)
	② 사업모델의 성장성		
2. 성장성 트랙 (평가주체 : 증권사)	① 기술의 혁신성		2. 사업모델 트랙 (증권사가 사업성 · 성장성 평가)
	② 사업모델의 성장성		

2) 주요 내용

- 용어의 변경(제10조의3 제1항 제4호)
 -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에 따라 ‘기술성장기업’ 중 기존 환매청구권 부여 대상을 ‘사업모델기업’으로 용어 변경
 - 기술성장기업(일명 기술평가기업, 성장성추천기업) 중 성장성추천기업만 환매청구권 부여 의무화
- 주관회사 책임성 강화(제10조의3 제5항)
 - 최근 3년 이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동 주관회사가 혁신기술기업 상장 주관 시 일 반청약자에게 6개월 환매청구권을 부여토록 함

1)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의 주관회사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상장(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을 완료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준거기업에서 제외

[주관회사 책임성 강화에 따른 환매청구권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혁신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IPO를 주관하는 주관회사
준거기업	동 혁신기술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상장한 기술특례상장기업(혁신기술기업, 사업모델기업)
발동요건	상장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풋백옵션 부여의무	일반청약자에게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여야 함

* 혁신기술기업은 최근 3년 이내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동요건 발생 시 사업모델기업의 상장 주관 불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제3항)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23/12/28 개정 · 시행)**1) 개정 이유**

- 자율규제위원회의 재심사유가 협소하고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직권재심을 통한 폭넓은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재심사유에 관한 규정을 추가 ·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재심사유 규정 추가 · 신설(제23조 제3호 신설)
 - (기존)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 증거서류 오류 · 누락 ·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既제재가 부적절한 등 제재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권재심이 가능
 - (문제점) 위원회의 既제재 판단시 중요한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거나, 既의결 이후 법령 등의 해석 변경 또는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재의 구체적 타당성 실현을 위해 재심 허용 필요
 - (개정) 정의 · 형평의 실현 측면에서 재심 허용이 필요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바, 재심 대상을 확대
 - 다만, 재심의 본질과 제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재심사유는 ‘법령 또는 자율규제 규정 등 해석의 변경’, ‘중요한 사실관계의 착오’, ‘중요한 사정변경’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라. 적격기관투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3/12/8 개정 · 2023/12/14 시행)**1) 개정 이유**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 시행(2023.12.14)함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QIB) 대상증권 등록관리규정시행세칙에 금투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를 발표
 - 금융위 보도자료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021.1.25)

2) 주요 내용

□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2조)

- 외국법인등이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 중에서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삭제
 - 별지 제1호의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양식 중 외국법인등의 경우에 기재해야 하는 투자등록번호를 법인 식별기호(LEI)로 변경

마.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3/12/19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정보 유출 금지의무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제109조 제1항)

- 상장사 공시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당국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투자회사 및 임직원이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 불공정거래 조사정보 유출 금지(제109조 제3항)

- 불공정거래 조사시 원활한 조사과정의 진행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조사정보 유출금지 의무 마련 필요
-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관련 정보에 대한 제3자 유출 금지조항 신설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